

■ 군인사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2.1.31>

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(제44조제2항 관련)

대상 외국어	능통의 정도
프랑스어 · 독일어 · 스페인어 · 중국어 · 말레이-인도네시아어 · 포르투갈어 · 터키어 · 태국어 · 이탈리아어 · 미얀마어 · 이란어 · 러시아어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	왼쪽 난의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.